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 계 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

구 미 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른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의 매각수익 재투자 조항에 의거 기반시설 재투자에 해당하는 도서관 부지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위　　치 :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724번지
○ 대　　상 : 도서관 부지 1필지[5,000.1㎡(대)]
○ 기준가격 : 3,084백만원 ※ 2026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구미 확장단지 조성사업 현황
- 위　　치 : 옥계동 및 산동읍 일원
- 조성면적 : 2.476㎢(75만평)
- 사업기간 : 2008. ~ 2026.
- 사 업 비 : 8,207억원
- 시 행 자 : 한국수자원공사

○ 추진현황
- 구미 확장단지 1~3단계 준공 : '24. 까지
- 구미시립산동도서관 개관 : '24. 9. 25.
 ※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임차
- 매각수익 재투자 협의 : '25. 1. ~ '26. 4.
- 구미 확장단지 4단계 준공 : '26. 1.
- 매각수익 재투자 협약서 체결 : '26. 4.
- 공유재산심의회 : '26. 9.

○ 향후추진계획

• 소유권 이전 : ’26. 10.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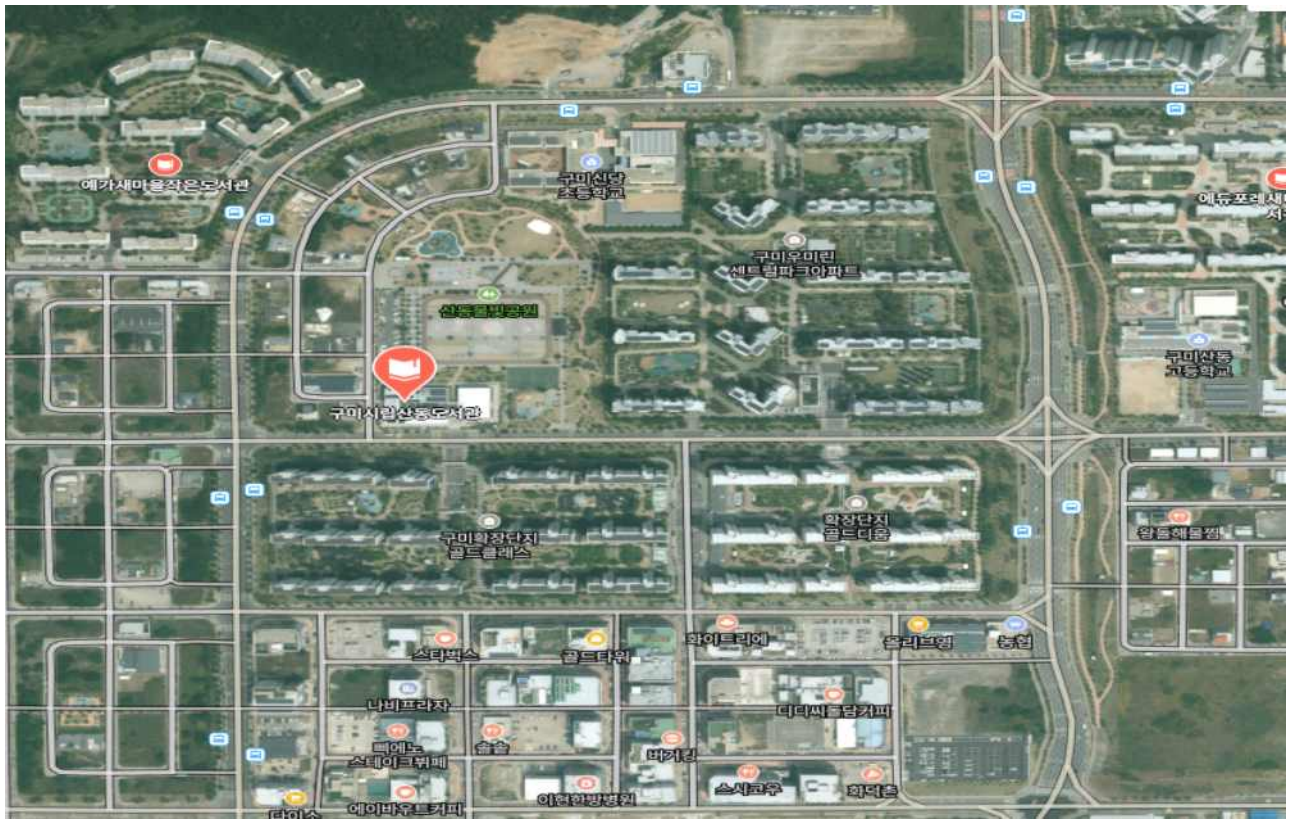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건	5,000.1	3,084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5,000.1	3,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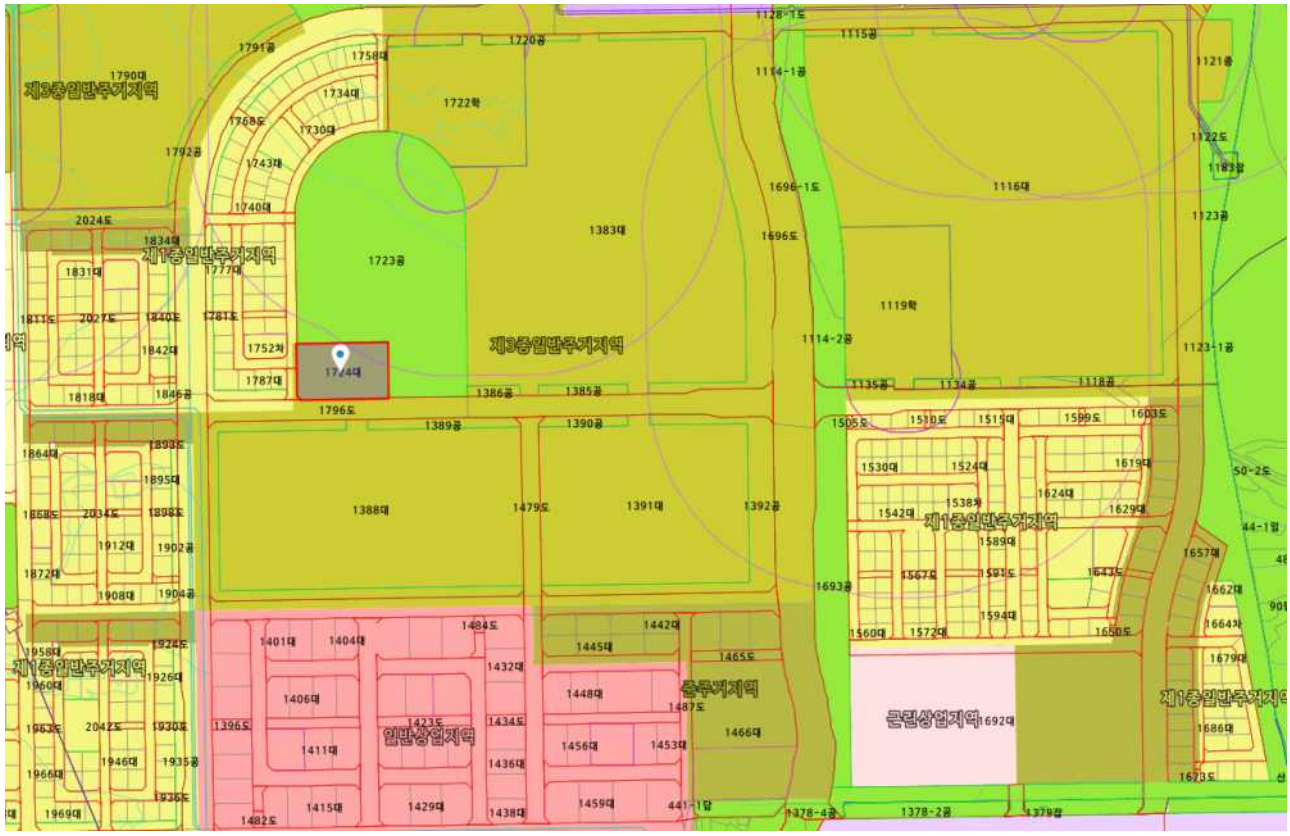
취득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산의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사 유	재산소유자	비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					
총계			5,000.1	3,084				
취득	토지	산동읍 신당리 1724	5,000.1	3,084	2026년	매각수익 재투자 기부채납	한국수자원공사	기부채납

위 치 도


구미시립산동도서관
구미산동
고등학교
구미확장단지
골드클래스
확장단지
골드타운
스타벅스
골드타워
나비프라자
솔솔
버거킹
스시고수
에이바우트커피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안건은 구미 확장단지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건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직접적인 구미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안건은 구미 확장단지 내 도서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 구미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구미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시립중앙도서관 관리팀 서민지(054-480-465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 11. 생략

②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 ④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

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 관 부 서		회 계 과 (시립중앙도서관)
입 안 자	과 장	임 웅 건 (류 정 숙)
	팀 장	전 유 향 (정 숙 희)
	담 당 자	박 재 경 (480-5072) (서 민 지) (480-4654)